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	**o 복무관리 부적정 (개인경고)**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 「취업규칙」제7조(복무의무)에 따르면 관리원 직원은 관리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고 각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, 제8조(근무상황관리)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, 결근, 지각, 조퇴, 외출 등의 근무상황은 ERP 등 전자시스템에 의해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「취업규칙」제9조(결근신고), 제32조(연차휴가)에 따르면 직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결근신고를 결근 전일까지 하여야 하고,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관리원은 2016. 7. 1.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자(정**, 최** 2명)를 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, 정**, 최**은 본인이 수립·제출한 세부업무계획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. 9. 12. 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복무점검 결과, 정**, 최**은 결근신고 및 연차휴가처리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, 관리원은 정**, 최**에 대하여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임됨 **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**은 결근신고 및 연차휴가처리 없이 점검 당일 출근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,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[관련자] 연구위원 정**(19**. *. *.) 연구위원 최**(19**. *. **.)

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	**o 교육훈련대상자 근태관리 부적정 (개선요구)**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은 「교육훈련규정」에 의거, 우수인재의 지속적 자기개발 및 전문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, 박사과정은 최대 3년, 석사과정은 최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등록금 및 입학금의 70%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석유에너지팀 4급 연**, 석유대체연료팀 4급 전**은 2015. 2. 각각 **대, **대 박사과정 교육훈련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었음 한편 「교육훈련규정」제13조(근태처리)에 따르면 교육중인 모든 직원의 근태사항은 현업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16. 9. 12. 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복무점검 결과, 2015년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연**은 연차휴가 처리, 전**은 외출처리 후 평일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**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**은 대학원 교육훈련자별로 근태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처리기준을 수립・시행하시기 바람

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	**o CCTV 관리 부적정 (기관주의)**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는 「보안업무규정」제57조(청사보안)에 따라 청사보안을 위해 분석지원동 등 주요 개소 에 총 **대의 CCTV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 CCTV 설비는 실시간으로 CCTV가 설치된 곳의 상황을 감시·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, 사고 발생 이후 CCTV가 설치된 곳의 사고 당시 주변 상황 및 원인 파악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, 특히 취약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2016. 9. 12.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CCTV 설비 점검 결과, CCTV 서버를 자물쇠·프로그램 비밀번호 설정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직원 구내식당에 설치함에 따라 장치 임의조작, 자료 무단열람, 삭제 등의 우려가 있음 그리고 ****동 옥상에 위치한 가스저장탱크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빛번짐 현상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, 연구소 정문 CCTV의 경우 녹화 저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 이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음 **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**은 ① CCTV 서버를 임의로 조작, 열람, 삭제할 수 없도록 자물쇠·프로그램 비밀번호 설정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고, ② 고장 등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CCTV는 즉각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여 감시시설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하기 바람